제8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
안건 ①

포용금융 확대를 위한
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

2026. 11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과제 ····· 3

1. 포용금융 내재화 : 자본규제 합리화 ····· 3

2. 포용금융 내재화 : 자산건전성 규제 합리화 ····· 6

3. 포용금융 지원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·· 8

Ⅲ. 향후 계획 ····· 10

Ⅰ. 추진 배경

□ 금융권은 **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** 및 **금융생활 안정 지원**을 위하여 **포용금융을 적극 추진 중**

○ **은행권**은 중·저신용자 대상 **새희망홀씨** 등 신용공급을 지속 확대[1]하고, 다양한 **사회공헌**[2] 및 **정책지원**[3] 활동을 수행

* 1)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(조원) : ('24년) 3.5 → ('25년) 4.0 → ('26.上) 2.6
2) 취약계층, 지역사회·공익, 학술·교육, 문화·체육·예술, 환경 등(최근 5년 7.2조원)
3) 코로나19 만기연장·이자유예(133.4조원), 소상공인 이자환급(1.5조원) 등

○ **보험업권**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**취약계층**(약 150만명)에 **무료 상생보험**을 지원하고, **저축은행** 등은 **중금리대출 활성화** 추진중*

*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('26.6.1일~11.18일 누적 약 5천억원 공급), 민간중금리 대출 인센티브·온투업 연계투자 확대, 여전업권 사잇돌대출 확대 취급 등

□ 금융권 **포용금융 확대**에 따라,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**低신용자*** **신용대출 금리는 하락**하고, **잔액은 증가**(☞참고1)

* 高신용자 : 신용평점 상위 50% / 中신용자 : 상위 50~80% / 低신용자 : 하위 20%

○ **시장금리 상승***으로 **中-高신용자 금리**(잔액기준)는 **상승**했으나, **低신용자 금리**는 0.05%p[은행] ~ 0.27%p[저축은행] **오히려 하락****

* 은행채 1년물 금리 : ('26.3월말) 3.24% → ('26.7월말) 3.67% [+43bp]

** 低신용자 잔액기준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, **신규취급 금리의 하락 효과**가 **기존 대출**(변동금리)의 **금리 상승효과를 상쇄**

< 신용도별·업권별 신용대출 금리변화 >

구분(단위 : %)	低신용자			中신용자			高신용자		
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
은행	8.68	8.63	**△0.05**	5.82	5.99	**0.17**	4.95	5.14	**0.19**
상호금융	7.51	7.51	-	5.99	6.12	**0.13**	5.58	5.74	**0.16**
새마을	6.89	6.83	**△0.06**	6.00	6.02	**0.02**	4.82	4.87	**0.05**
보험	9.92	9.79	**△0.13**	8.62	8.63	**0.01**	8.39	8.40	**0.01**
여전(신용)	14.94	14.87	**△0.07**	13.20	13.21	**0.01**	7.11	7.26	**0.15**
여전(카드론)	15.30	15.12	**△0.18**	13.02	13.06	**0.04**	11.10	11.11	**0.01**
저축은행	15.34	15.07	**△0.27**	14.49	14.32	**△0.17**	5.91	5.80	**△0.11**
여전(현금서비스)	19.07	19.09	**0.02**	18.19	18.23	**0.04**	16.14	15.97	**△0.17**

* 신정원이 가계대출 차주별 신용점수·금리 등 데이터 분석

○ 低신용자 **신용대출 잔액은 증가**('26.3월 83.1조원→'26.7월 84.1조원, +1.0조원)하였으며, 증가율은 **低(+1.2%)-中**(+0.0%)**-高**(△0.3%) **순**

< 신용도별 신용대출 잔액 변화 >

구분(단위:조원)	'26.3월(B)	'26.7월(C)	증감(C-B)
합계	345.6(100%)	346.2(100%)	0.6(+0.2%)
高	160.6(46.5%)	160.1(46.2)	△0.5(△0.3%)
中	101.9(29.5%)	101.9(29.4%)	0.0(-)
低	83.1(24.1%)	84.1(24.3%)	**1.0(+1.2%)**

□ 건전성 규제 관련 **국제기준 및 해외사례** 등을 감안하여 **포용금융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**

○ 금융위·원은 '**포용금융추진단 건전성규제 합리화반**'을 통해 금융권과 **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과제**를 **발굴**('26.6월~)

○ 금융회사의 **건전경영**이라는 **건전성 규제의 목적**을 **유지**하되,

- **포용금융**에 대한 금융권의 **유인을 축소시키지 않도록** 건전성 규제체계 **합리화 방안**을 마련

□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권은 **포용금융**을 **장기적·지속가능한 경영전략으로 활용**할 수 있을 것으로 **기대**

○ **대안신용평가** 등을 통해 차주의 **실질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**하고 **선별**하는 과정에서 **신용평가 체계**를 **고도화**

○ **채무조정 활성화**를 통해 차주의 **상환가능성을 제고**하고, **중장기적**으로 **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**에 기여 가능

○ **기타 자본규제 합리화**를 통해 **자본여력을 확보**하여 **지속적인 포용금융 확대 기반**을 마련

※ 다만, 바젤위원회의 규제이행평가(RCAP) 대응,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**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고려**하여 검토

Ⅱ. 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과제

1. 포용금융 내재화 : 자본규제 합리화

1 <은행>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스포져 위험가중치(RW) 합리화

□ **(현황)** 은행은 신보·기보 등의 보증부대출에 RW 0%를 적용하고 있으나, 소진공 보증부 대출은 **RW 20% 적용 중**

○ 現 은행업시행세칙* 상 공공기관 중 **정부**로부터 **제도적**으로 **결손보전**이 되는 기관의 경우 **RW 0% 적용 가능**

*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3] 신용·운영리스크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

- 신보, 기보, 지신보, 농신보, 무보, 예보, 캠코 등 **정부 결손보전** 공공기관은 **RW 0% 적용 중**

○ 다만, **소진공**은 근거법상 **기관에 대한 결손보전 조항이 없어** **RW 20%** 적용 중

□ **(개선방안)** 소진공 사업의 **정책 목적성, 소관 기금**에 대한 정부의 **결손보전 의무** 등을 고려하여 **RW 0% 적용**

○ 소진공은 **사업 재원의 대부분**을 차지*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 **정부 결손보전 의무**(「소상공인법」 §22의3)가 인정됨

* 소진공 사업의 대부분(90% 이상)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운영[※소진공 공시자료]

✓ **조치사항 :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3 개정**

2 <은행> 공공기관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합리화

□ **(현황)** 은행의 시장리스크* 산출시 **정부** 등의 **부도리스크 RW**는 0%이나, 공공기관은 **RW 0.5~15%**** **적용 중**(일반기업과 동일)

* 시장리스크 = 민감도리스크(금리·환율·주가 등) + 부도리스크 + 잔여리스크

** 공공기관 신용등급별 RW : (AAA) 0.5%, (AA) 2%, (A) 3%, (BBB) 6%, (BB) 15%

○ 반면, 은행은 신용리스크 산출시에는 **공공기관**이 **정부의 결손보전**을 받는 등의 경우, 정부와 동일하게 **RW 0%** 적용 중

□ **(개선방안)** **신용리스크 RW 0%**가 적용되는 **공공기관***의 익스포져는 **시장리스크 中 부도리스크 RW**도 동일하게 **0% 적용**

* 정부의 결손보전 등으로 실질적인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(신보, 기보 등)

✓ **조치사항 :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3의2 개정**

3 <보험>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K-ICS 위험계수 합리화

□ **(현황)** 서금원은 **서민대출**의 **보증기관 역할**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K-ICS 체계상 **신용등급이 없어** **적격 보증인***에 **미해당**

* 적격 보증인 조건 : 보증인의 K-ICS신용등급이 3등급(해외A, 국내 AA) 이상 등

○ **서금원 보증부대출**(예: 햇살론)은 **실질 위험 경감효과**에도 불구하고, **일반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한 위험계수**(8%) **적용 중**

□ **(개선방안)** 서금원이 **정부출연**을 받는 **공공기관**인 점, **他 업권 사례*** 등을 고려하여 **적격 보증인으로 인정**하고 **낮은 위험계수** 적용(2.5%)

* (은행)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받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적격 보증인에 해당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 인정

✓ **조치사항 :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22 개정**

4 <은행>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규제모형 승인 추진

□ **(현황)** 은행의 **대안신용평가모형**(전략모형)은 **여신심사 단계**에만 활용되고, **자본비율 산출**(규제모형) 등에는 활용이 **제한**

※ 은행권 신용평가모형은 **전략모형**과 **규제모형**으로 나뉘어 운영

❶ **(전략모형) 대안정보·최신기법**을 활용하며, 별도 승인 없이 **우량 중·저신용자 발굴** 등 **여신심사**에 **제한적**으로 활용

❷ **(규제모형)**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 중심의 **전통적 신용평가 모형**으로, 금감원 **승인**을 받아 **여신심사**뿐 아니라 **건전성 관리**(자본·충당금) **전반**에 **활용**

○ 은행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결과 **규제모형에 비해** 해당 중저신용자의 **부실률이 낮아도, 자본비율·충당금 산정에는 미반영**

□ **(개선방안)** 대안신용평가모형을 **규제모형으로 승인**하여 **대출 승인·금리·한도·건전성 관리** 등 **여신 全과정에 걸쳐 활용**

○ 규제모형 승인을 위해 **바젤기준**과의 **정합성**을 **유지**하면서도 **대안모형의 특성**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**승인 기준 보완***

* 예: 대안모형에 활용되는 데이터(예: 통신비 결제내역)는 정보 축적기간이 짧아(예: 3년) 전통모형을 전제로 한 승인요건 보완 필요

→ 바젤의 부도 데이터 기간 최소요건(5년)은 준수하되, 평가등급 산출이 어려운 기간은 추정을 허용(다만, 부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)

○ **자본부담 완화*** 효과가 **경영성과**에 반영됨에 따라, 대안신용평가모형이 **여신심사에 내재화**되는 **기반**을 마련

* A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RW가 120%→80%~100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(잠정)

- **자본부담 완화 효과**에 따라 은행권의 **대안모형 도입이 확대**되고, **포용금융 확대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

✓ **조치사항 : 은행권 대안신용평가모형 특성을 반영한 규제모형 승인 활성화**

2. 포용금융 내재화 : 자산건전성 규제 합리화

5 <은행 · 보험 · 여전 · 저축은행> 자체 채무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 요건 합리화

□ **(현황)**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여신(채무조정 시점 '요주의' 여신 限)은 채무조정 개시 후 1년 이상 정상 상환하여야 '정상' 분류 가능

○ 반면, **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** 여신은 **6개월 이상 정상 상환시 '정상'** 여신으로 **분류 가능**

→ **채무조정 주체**에 따라 **자산건전성 분류상 차이**가 발생하여 **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낮추는 요인**으로 작용할 우려

<자산건전성 상향 조정에 필요한 정상상환 기간>

구분		자체 채무조정	신복위 프리워크아웃 (또는 개인워크아웃)
채무조정개시	변경되는 분류		
요주의	정상	1년 이상	6개월 이상
고정이하	요주의	전체 상환기간의 1/3 이상 or 4년 이상	
회수의문·추정손실	고정	전체 상환기간의 1/4 이상 or 2년 이상	
(고정이하→)요주의	정상	1년 이상	

□ **(개선방안)** 금융회사 **자체 채무조정 여신**(요주의)도 채무조정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시 '정상' 여신으로 분류

○ 자체 채무조정과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간 **규제차이를 해소**하고, 금융회사의 **자체 채무조정 확대를 유도**

○ 다만, 채무조정 여신의 신용위험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**등급 상향 대상 여신**에 대한 금융회사의 **자체기준***을 마련·운영

* 채무조정 개시 이후 타 금융회사 채무불이행 또는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 여부 등 고려

✓ **조치사항 : 「은행업 / 보험업 / 여신전문금융업 /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」 개정**

6 <카드> 연체 이전 채무조정의 연체 분류기준 개선

□ **(현황)** 연체 이전이더라도 카드사 자체 채무조정 또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* 시 연체채권** 및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 중

* 연체 우려 또는 연체 3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

** 카드사의 경우 대출조건 변경시(채무조정)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연체채권에 포함 중

○ 이에 따라 채무조정시 카드사의 연체율 증가 및 **충당금 적립 부담 확대**에 따라 카드사의 **사전 채무조정 유인 약화 우려**

□ **(개선방안)** 미연체 채권은 자체 채무조정 또는 신속채무조정 시에도 **연체 채권에서 제외**하고 **정상 채권으로 분류**

✓ **조치사항 :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별표1, 「여신전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4 개정**

7 <저축은행> 영세 소상공인 대출 건전성 분류 합리화

□ **(현황)** 저축은행권은 **개인사업자의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**하는 경우, **'부실징후 예시'**에 해당하여 **'요주의'로 분류중**

○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다수 **소상공인·자영업자**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 **최초 취급시부터 '요주의'로 분류**되어 **충당금 부담 발생**

<부실징후 예시(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별표7**>**

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
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 잠식
③ (법인)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, (개인사업자)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초과

□ **(개선방안)** **법인과 유사**하게 개인사업자의 '부실징후 예시'에 **'최근 2년 연속 순손실 발생' 요건을 추가***

* 정상적인 경영환경에서도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감안(예: 일회성 시설투자로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), 경영의 안정성·지속성을 추가 판단

✓ **조치사항 :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별표7 개정**

3. 포용금융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

8 <은행> 후순위채 자본인정액 산정방식 합리화

□ **(현황)** 은행은 **보완자본**으로 인정되는 **후순위채의 만기가 5년 이내**인 경우, **자본인정액을 매년 20%씩 차감**하여야 함

○ 은행은 규정을 **보수적**으로 **해석**하여 **매년 초에 20%를 일괄 차감**하고 있어, **자본차감의 영향이 크게 반영**되는 문제

* 특히, 후순위채 만기 전 최종 1년은 자본인정액 0%가 적용되는 문제 발생
※ 반면, 저축은행은 매분기 초마다 5%씩 차감하도록 규정 중(시행세칙)

□ **(개선방안)** 은행이 후순위채권의 자본인정액을 **매분기 초에 5%씩 차감할 수 있음**을 **해석상 명확화**

✓ **조치사항 :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3 유권해석**

9 <은행> 해외 펀드 위험가중치 적용 요건 합리화

□ **(현황) 집합투자증권** 익스포져 중 ❶**충분히 상세한 정보**를 ❷**적시에 입수**할 수 있는 경우 **기초자산접근법 적용 가능***

*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자산접근법 대신 **약정서기반접근법**을 적용하여 **기초자산 중 가장 높은 RW**를 우선적으로 적용

○ **해외 집합투자증권**은 국내에 비해 **즉각적인 자료 입수가 어려운 경우**가 많아, ❷**적시 요건** 미충족으로 **높은 RW 적용**

* 예) '26.3월말 기준 재무제표 작성시 국내 펀드는 기초자산 등을 '26.3월말 기준으로 입수할 수 있으나, 해외 펀드는 '25년말 등의 정보입수 가능(정보입수 지연)

□ **(개선방안)** 집합투자증권 중 **적시는 아니지만 최근 정보를 입수**할 수 있는 경우*, **기초자산접근법**을 적용할 수 있도록 **해석 명확화**

* 예: '26.3월말 은행 재무제표 작성시 '25년말~'26.2월말 기간 등 최근의 기초자산 등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, 이를 근거로 기초자산접근법 사용 가능

✓ **조치사항 :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별표3 유권해석**

Ⅲ. 향후 계획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同 **과제**를 통해 확보한 **자금여력을 포용금융에 충실히 공급**하는지 **모니터링** 할 계획

○ 앞으로도 금융권이 **포용금융을 확대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하고, **자본규제 합리화 과제** 등을 지속적으로 **발굴·검토**

과제명			조치사항	추진일정
포용금융 내재화	자본 적정성	1. <은행> 소진공 익스포져 위험가중치(RW) 합리화	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~'27.3월
		2. <은행> 공공기관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합리화	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~'27.3월
		3. <보험> 서금원 보증부대출 K-ICS 위험계수 합리화	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~'27.3월
		4. <은행>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규제모형 승인 추진	규제모형 승인	-
	자산 건전성	5. <은행·보험·여전·저은> 자체 채무조정 여신 자산건전성 상향요건 합리화	각 감독규정 개정	~'27.3월
		6. <카드> 연체 이전 채무조정의 연체 분류기준 개선	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	~'27.3월
		7. <저축은행> 영세 소상공인 대출 건전성 분류 합리화	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	~'27.3월
지원여력 확보		8. <은행> 후순위채 자본인정액 산정방식 합리화	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해석	~'27.1월
		9. <은행> 해외 펀드 위험가중치 적용 요건 합리화	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해석	~'27.1월

참고1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공급현황 분석 결과(신용정보원)

□ (금리) 평균 ①7~8%대 은행·상호금융, ②9%대 보험사 대출, ③14~15%대 저은·여전사(신용, 카드론) 대출 및 ④19%대 현금서비스 등* 順

* 대부업권(10~26조원)의 경우 신정원 금리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나 평균 약 16~17% 추정

○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으로 中-高신용자 금리는 상승하는 가운데, 低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만 대부분 업권에서 하락

- 특히, 잔액 기준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, 신규 취급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효과를 상쇄

< 신용도별 업권별 신용대출 금리 변화('26.3월말→7월말) >

구분(단위 : %)	低신용자			中신용자			高신용자		
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
은행	8.68	8.63	△0.05	5.82	5.99	0.17	4.95	5.14	0.19
상호금융	7.51	7.51	-	5.99	6.12	0.13	5.58	5.74	0.16
새마을	6.89	6.83	△0.06	6.00	6.02	0.02	4.82	4.87	0.05
보험	9.92	9.79	△0.13	8.62	8.63	0.01	8.39	8.40	0.01
여전(신용)	14.94	14.87	△0.07	13.20	13.21	0.01	7.11	7.26	0.15
여전(카드론)	15.30	15.12	△0.18	13.02	13.06	0.04	11.10	11.11	0.01
저축은행	15.34	15.07	△0.27	14.49	14.32	△0.17	5.91	5.80	△0.11
여전(현금서비스)	19.07	19.09	0.02	18.19	18.23	0.04	16.14	15.97	△0.17

□ (잔액) 신용대출은 低신용자만 잔액이 증가하였으며, 증가율은 低(+1.2%)-中(0.0%)-高(△0.3%) 순

< 신용도별·대출종류별 잔액 변화('26.3월말→7월말) >

구분(단위:조원)		'26.3월(B)	'26.7월(C)	증감(C-B)
신용	합계	345.6(100%)	346.2(100%)	0.6(+0.2%)
	高	160.6(46.5%)	160.1(46.2)	△0.5(△0.3%)
	中	101.9(29.5%)	101.9(29.4%)	0.0(-)
	低	83.1(24.1%)	84.1(24.3%)	1.0(+1.2%)
주담대	합계	763.7(100%)	775.8(100%)	12.1(+1.6%)
	高	560.6(73.4%)	569.4(73.4%)	8.8(+1.6%)
	中	151.3(19.8%)	153.5(19.8%)	2.2(+1.5%)
	低	51.8(6.8%)	52.9(6.8%)	1.1(+2.1%)

참고2 그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방안 내용

<은행>

1. 부동산 부문 자금부담 강화

□ (주담대 RW 상향) 은행이 **주담대** 신규취급시 적용하는 **내부등급법 RW 하한**을 **15%**에서 **20%**로 **상향**('26.1월 기조치)

□ (고위험 주담대 확대) **고위험 주담대 유형**을 **확대**(고액·고DSR 주담대, 고가주택·고LTV 주담대*)하여 **RW 상향**('27.1월 시행 추진)

* **세부 부과기준**은 은행권 협의, 자본비율 영향분석 등을 거쳐 **추후 확정**('26.4분기)

□ (SSyRB)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*('27.1월 시범운영)

* **[Sectoral System Risk Buffer]** 가계부채/GDP 비율이 일정수준(예: 80%) 상회 시 은행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(상한(예: 1%) 설정)

2.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부담 경감

□ (주식 RW 하향) 비상장 주식 적용 RW를 원칙400%, 예외250%에서 원칙250%, 예외400%*로 **변경**('26.3월 기조치)

* 보유 3년 미만의 단기매매(short-term resale) 목적 또는 업력 5년 미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 익스포져는 400% 적용 (그 외는 모두 250%)

□ (정책목적 RW) 정책 목적 펀드는 RW 100%*로 적용('26.3월 기조치)

* ①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
② 사업분야는 별도의 제한 없이 특정 산업·기업·시장 등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인정
③ 정부(지자체·RW 0% 적용 공공기관 등 포함)가 직접투자, 손실보전 등의 방법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수준(동순위20%, 후순위7.4%, 함산비율20%) 이상을 지원

3.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한 은행권 생산적 금융 자금공급 여력 확대

□ (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) 은행권 **해외점포 출자금, 해외장기 지분투자, 해외점포 이익잉여금**에 대하여 **구조적 외환포지션***으로 승인하고 **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**('26.5월 기조치)

* ❶**비거래**(structural) **목적**, ❷환율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**불리한 변동성**을 **축소**하기 위해 **오픈**하는 포지션 → **금감원장 승인**하에 **시장리스크 산출 대상**에서 제외 허용

□ (운영리스크 인식 합리화)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**운영리스크 배제**('26.9월 기조치)

<보험>

1. 주식위험액(주식·지분투자) 측정 합리화

□ (정책펀드) 재정지원에 따른 **실질적인 위험경감 효과**를 **반영**[*] 하고, **장기보유 특례 적용대상**을 **확대**[**]하여 **장기투자 유인 제고**

* 보험사가 투자한 정책펀드가 재정으로 20% 우선손실충당시 위험계수 20% 경감
** 장기보유 특례 대상 : (現) 상장주식 → (改) 상장주식 + 펀드 + 비상장주식

□ (벤처펀드) **정부 관리·지원**을 받는 **벤처기업**[*]에 대한 **투자 시, 상장주식 수준 위험계수**(49→35%)를 **적용**하여 **자본부담 경감**
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'벤처기업'에 해당 시

2. 신용위험액(대출·채권) 측정 합리화

□ (인프라 대출) 신재생에너지·AI 기반시설 등 **비전통적 인프라 투자·대출**도 '**적격인프라**' **특례 인정**

□ (정부보증) **정부** 등으로부터 **일부보증**을 받는 **인프라 대출**의 경우, **보증분**에 대해서는 **위험계수 0%**가 **적용**되도록 **개선**[*]

* 인프라 대출의 경우, 정부 등이 전액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을 분류하였으나, 실제 보증범위에 비례한 위험경감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

3. 펀드 관련 위험계수 합리화

□ (블라인드펀드) **실제 블라인드펀드 투자 사례**를 **분석**하여 **미집행 약정**의 **출자예정률**[*]을 **도출**하고 **위험액 산출 세부기준 마련**

* (現) 잔여약정금액을 잔여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
(改) 보험업권 실제 투자관행 등을 반영한 출자예정률에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

4.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합리화

□ (주담대) **은행업권** 대비 **주택담보대출 위험액**이 **낮게 측정**되는 **LTV 구간**(60 ~ 80%)의 **위험계수**를 **상향**(3.5% → 4.0%) **조정**[*]

* 부동산금융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, 금융업권간 부동산(주택) 금융 관련 건전성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정책 풍선효과를 미연에 방지